#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62

발의연월일: 2020. 11. 26.

발 의 자:신동근·백혜련·김남국

김용민 · 김종민 · 박범계

박주민 · 소병철 · 송기헌

최기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통보를 받거나"를 "통지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으로 한 다.

제9조의3제2항 중 "통보를 받거나"를 "통지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또는"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으로, "그 처분"을 "그 결정"으로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생 략)	관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	
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	
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	
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	
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u>통</u>	<u>통</u>
<u>보를 받거나</u> 내사사건에 관하여	지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피의자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	
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	
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
행에 관한 통지) ① (생 략)	행에 관한 통지) ① (현행과 같
	음)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	2
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	
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u>통보를 받거나</u>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 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 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 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거나 건 처분 	
제			위한 ] 통지	

- 2. <u>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u> 정 처분을 한 경우: <u>그 처분</u>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 한 때부터 30일 이내
- 3. (생략)
- ② ~ ⑦ (생 략)

한 닡	부터	30일	이내
-----	----	-----	----

- 2.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 그 결정--
  - 3.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